

# 유료도로법

## 법령단위비교표

※ 본 면은 백지로 비워둡니다.

# 차 례

<b>유료도로법</b>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b>유료도로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b>유료도로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5 제1조 목적 .....5 제2조 정의 .....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6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6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8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11 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11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11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20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 21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21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21 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22 제13조 권리의 변동 .....23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23  제4장 통행료 / 24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24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28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30 제18조 통합채산제 .....30 제18조의2 통행료의 일괄 수납 .....31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31 제20조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제1조 목적 .....5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5 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 .....6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6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6 제5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8 제6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11  제7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11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1  제9조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20 제10조 통행료 수납기간 등 .....21 제11조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21 제12조 통합채산제 .....22 제13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23 제14조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23 제15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24 제15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제1조 목적 .....5  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5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6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6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8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11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11 제8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11

<p>.....31</p> <p>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32</p> <p>제21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33</p> <p>제21조의3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34</p> <p>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35</p> <p>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35</p> <p>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관리 등 / 36</p> <p>제23조의2 정부 등의 책무 .....36</p> <p>제23조의3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36</p> <p>제23조의4 국회에 대한 보고 등 37</p> <p>제23조의5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37</p> <p>제23조의6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38</p> <p>제23조의7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38</p> <p>제23조의8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40</p> <p>제5장 보칙 / 41</p> <p>제24조 특별회계 등 .....41</p> <p>제25조 감독 .....41</p> <p>제25조의2 과징금 .....41</p> <p>제6장 벌칙 / 42</p> <p>제26조 벌칙 .....42</p> <p>제27조 양벌규정 .....42</p> <p>제28조 과태료 .....43</p> <p>제29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43</p>	<p>구축·운영 .....24</p> <p>제15조의3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25</p> <p>제15조의4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27</p> <p>제15조의5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28</p> <p>제16조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28</p> <p>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9</p> <p>제1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p> <p>제17조 규제의 재검토 .....30</p> <p>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30</p>	<p>제8조의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18</p> <p>제8조의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19</p> <p>제8조의4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20</p> <p>제9조 규제의 재검토 .....20</p>
---	--	--

법령단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b>유료도로법</b>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b>유료도로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b>유료도로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p align="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5. 5. 7.&gt;</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5. 1. 11.&gt;</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1.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li> <li>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li> <li>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li> <li>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li> <li>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li> <li>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li> <li>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li> </ul> </li> </ol>	<p><b>제2조(건설기계의 범위)</b>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lt;개정 2005. 5. 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덤프트럭</li> <li>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li> <li>3. 콘크리트믹서트럭</li> <li>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li> <li>5. 아스팔트살포기</li> <li>6. 노상안정기</li> <li>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li> </ol>	<p><b>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b>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 1.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수지예산명세서</li> <li>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li> <li>4. 설계도서(위치도·평면도·종단면도·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ol>

<p>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b>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lt;개정 2019. 1. 15.&gt; [본조신설 2005. 5. 7.]</p>	
<p><b>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lt;개정 2014. 1. 14.&gt;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b>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p>	<p><b>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b>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b>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b> <b>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b>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p>	<p><b>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b>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p>	<p><b>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b>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gt; 1. 사업계획서</p>

<p>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고속국도</li><li>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li><li>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li></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9. 11. 26.&gt;</p> <p>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19. 11. 26.&gt;</p> <p>[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9. 11. 26.]</p>	<p>다른 권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14.]</p>	<p>2. 설계도서</p>
---	--	----------------

<p><b>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3. 3. 23.]</p>	<p><b>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b>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p>1. 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신설·개축구간</p> <p>2. 공사예산</p> <p>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p> <p>4. 통행료의 금액·수납방법 및 수납기간</p>	<p><b>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b>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lt;개정 2005. 1. 11.&gt;</p> <p>②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p> <p>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lt;신설 2005. 5. 7.,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gt;</p> <p>1. 승용자동차</p> <p>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p> <p>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p> <p>④ 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lt;신설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gt;</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p> <p>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p> <p>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p>
--	--	--

		<p>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p> <p>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기자동차</p> <p>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lt;신설 2018. 6. 12.&gt;</p> <p>⑥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5. 1. 11., 2005. 5. 7., 2008. 2. 29., 2008. 5. 27., 2009. 9. 17., 2012. 9. 14.,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19. 1. 16.&gt;</p> <p>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p> <p>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p> <p>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p> <p>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제5호·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p>
--	--	--

		<p>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p> <p>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⑦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 1. 11., 2005. 5. 7., 2009. 9. 17., 2012. 9. 14., 2018. 6. 12.&gt;</p> <p>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신설 2019. 1.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li><li>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li><li>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li><li>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li></ol>
--	--	--

<p><b>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b>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b>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b>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에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p>
<p><b>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종류·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b>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4.]</p>	<p><b>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b>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에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p>
<p><b>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p>	<p><b>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b>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lt;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7. 10. 15., 2008. 1. 11., 2008. 2. 29., 2008. 5. 19., 2012. 4. 17., 2012. 9. 5., 2012. 12. 21., 2013. 3. 23., 2014. 7. 14.,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19. 3. 26., 2019. 12. 31.&gt;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p>	<p><b>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b>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12. 18.]</p>	<p>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p> <p>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p> <p>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p> <p>2의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p> <p>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p>	
--	--	--

	<p>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p> <p>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p> <p>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p> <p>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p>	
--	--	--

	<p>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p> <p>7.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p> <p>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p> <p>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p> <p>8.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p> <p>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p> <p>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p>	
--	--	--

	<p>1년간으로 한다.</p> <p>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 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p> <p>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p> <p>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p> <p>10. 삭제 &lt;2019. 1. 15.&gt;</p> <p>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lt;신설 2019. 1. 15.&gt;</p> <p>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p> <p>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p> <p>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p> <p>③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lt;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8. 5. 19., 2011. 11. 28., 2012. 9. 5.,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gt;</p> <p>1. 통행료의 100분의 100</p> <p>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p> <p>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p> <p>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p>	
--	--	--

	<p>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p> <p>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p> <p>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p> <p>2. 통행료의 100분의 50</p> <p>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p> <p>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p> <p>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p> <p>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p>	
--	--	--

	<p>다.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p> <p>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p> <p>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p> <p>바. 제1항제9호의 차량</p> <p>3. 통행료의 100분의 30</p> <p>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p> <p>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p> <p>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gt;</p> <p>⑤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 7. 17., 2019. 1. 15.&gt;</p> <p>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p>	
--	---	--

	<p>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신설 2004. 12. 31., 2019. 1. 15.&gt;</p> <p>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신설 2019. 1. 15.&gt;</p> <p>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신설 2019. 1. 15.&gt;</p> <p>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lt;신설 2019. 1. 15.&gt;</p>	
		<p><b>제8조의2(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의 안전성</li> <li>2. 이용자의 편의성</li> <li>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li> </ol> <p>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p>

		<p>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li> <li>2.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li> <li>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li> </ol> <p>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6.]</p>
		<p><b>제8조의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b>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li> <li>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li> <li>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li> <li>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li> </ol> <p>[본조신설 2019. 1. 16.]</p>

		<p><b>제8조의4(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b>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 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건비</li> <li>2. 수선유지비</li> <li>3. 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p> <p>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li> <li>2.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li> </ol> <p>[본조신설 2019. 1. 16.]</p>
<p><b>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b>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p>	<p><b>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b> 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p>	<p><b>제9조(규제의 재검토)</b>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p>

<p>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p>	<p>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2. 제7조에 따른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전문개정 2016. 12. 30.]</p>
<p><b>제3장 유료도로관리권</b> <b>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b>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b>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5. 5. 7.,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7. 14.&gt;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p>	

	<p>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li> <li>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li> <li>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4. 소비자단체의 대표</li> <li>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li> </ol> <p>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b>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2조(통합채산제)</b>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에 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li> <li>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li> <li>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li> <li>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li> </ol>	

	<p>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 7. 14.&gt;</p>	
<p><b>제13조(권리의 변동)</b>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b>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p>	
<p><b>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b>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 14.&gt;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b>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04. 12. 31.&gt;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p>	

	<p>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p> <p>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통행료</b></p> <p><b>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b>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lt;신설 2018. 1. 16.&gt;</p> <p>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lt;신설 2018. 1. 16.&gt;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b>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사유·납부기간·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lt;개정 2019. 1. 15.&gt;</p> <p>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lt;개정 2019. 1. 15.&gt;</p> <p>③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2020. 3. 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li> <li>2. 징수사유</li> <li>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li> <li>4. 납부기간</li> </ol>	
	<p><b>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b> 법 제21조의2제1항</p>	

	<p>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li> <li>2. 차량의 종류 및 색상</li> <li>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画像)정보</li> <li>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li> </ol> <p>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li> <li>2.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 관한 사항</li> <li>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li> </ol> <p>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10. 25.]</p>	
	<p><b>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b>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p>&lt;개정 2019. 1.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li> <li>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li> </ol> </li> </ol>	

	<p>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p> <p>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p> <p>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p> <p>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p> <p>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p> <p>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p> <p>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p> <p>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p> <p>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p> <p>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p> <p>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p> <p>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p> <p>[본조신설 2017. 7. 17.]</p>	
--	--	--

	<p><b>제15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b>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p> <p>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li><li>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li><li>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li></ol> <p>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li><li>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li><li>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li></ol>	
--	--	--

	<p>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p> <p>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p> <p>[본조신설 2019. 1. 15.]</p>	
	<p><b>제15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b> 법 제23조의7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p><b>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3. 3. 23.&gt;</p> <p>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t;신설 2019. 11. 26.&gt;</p> <p>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p>	<p><b>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b>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19. 11. 26.&gt;</p> <p>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11. 26.&gt;</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b></p> <p>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p>[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lt;2019. 1. 15.&gt;]</p>	
	<p><b>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p>	

	<p>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7. 17.] [제16조의2에서 이동 &lt;2019. 1. 15.&gt;]</p>	
<p><b>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b>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 3. 23.&gt;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18. 1. 16.&gt;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7조(규제의 재검토)</b>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전문개정 2016. 12. 30.]</p>	
<p><b>제18조(통합채산제)</b>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4. 1. 14.&gt;</p>	<p><b>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19. 1. 15.&gt; [본조신설 2014. 7. 14.]</p>	

<p>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p> <p>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p> <p>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4. 1. 14.&gt;</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b>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2. 3.]</p>		
<p><b>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b>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b></p> <p>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p>		

<p>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lt;개정 2017. 3. 21.&gt;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8. 1. 16., 2020. 3. 24.&gt;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8. 1. 16.&gt;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1. 16., 2020. 3. 24.&gt;</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18. 1. 16.&gt;</p> <p>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lt;신설 2018. 1. 16., 2020. 3. 24.&gt;</p> <p>[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8. 1. 16.]</p>		
<p><b>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b>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p>		

<p>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2. 3.]</p>		
<p><b>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b>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 16.&gt;</p> <p>1. 통행료의 감면</p> <p>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수납·강제징수</p> <p>3.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p> <p>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8. 1. 16.&gt;</p>		

<p>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p> <p>2. 차량의 색상 및 차명</p> <p>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p> <p>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p> <p>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 16.&gt;</p> <p>[본조신설 2017. 3. 21.]</p>		
<p><b>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b>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b>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p> <p>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p>		

<p>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관리 등 &amp;lt;신설 2018.1.16&amp;gt;</b> <b>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b>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p>		

<p>한다. [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b>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b>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p>		

<p>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p> <p>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p> <p>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p> <p>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b>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p>		

<p>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p> <p>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p> <p>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p> <p>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p> <p>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p> <p>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p>		
---	--	--

<p>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li>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li></ol> <p>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b>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b>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li><li>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li><li>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li></ol> <p>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b>제5장 보칙</b></p> <p><b>제24조(특별회계 등)</b>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7. 10. 31., 2018. 1. 16.&gt;</p> <p>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5조(감독)</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8. 1. 16.&gt;</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5조의2(과징금)</b>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lt;개정 2020. 3. 24.&gt;</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b>제6장 벌칙</b></p> <p><b>제26조(벌칙)</b>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2. 12. 18.]</p>		
<p><b>제27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p>		

<p>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2. 12. 18.]</p>		
<p><b>제28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li><li>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li><li>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li></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6.]</p>		
<p><b>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b>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 본 면은 백지로 비워둡니다.

## 참 고 문 헌

### [웹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C%A0%EB%A3%8C%EB%8F%84%EB%A1%9C%EB%B2%95#undefined>(2020. 8. 31)